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김평남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1830호

다. 발의일자 : 2020. 8. 12

라. 회부일자 : 2020. 8. 21

2. 제 안 사 유

- 현재 서울시는 과다한 수도 사용 및 누수, 미납 등으로 발생한 수도요금 체납분에 대해 수도사용자가 직접 유선 신청하여 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 즉,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 없이 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수도요금 분할 납부가 처리되고 있는 것임.
- 이에 분할납부 신청을 원하는 수도사용자들이 대부분 과다하게 발생한 수도요금을 전액 일시 납부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고 있는 만큼, 분할납부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고원활한 분할납부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수도사용자 등이 과다하게 발생한 수도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 제3항).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 토 의 견

가. 개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하여 수도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2020.05.27)에서 계절적 요인이나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과다 또는 미납 수도요금이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현재 서울시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수도요금 체납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허용1)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체납된 수도요금 중 시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할 것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한 바 있음.

다만, 현행조례에 따라 당초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기한²⁾(해당월 말일) 내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1개월³⁾ 동안 최대 3%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음.

¹⁾ **체납징수·징수처분 체계개선 계획**(상수도사업본부, '06.10.31.)

[:] 분할납부 방법 : 동일납기에 대해 3회에 한해 허용

[:] 분할납부 기간 :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²⁾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의 납부기한은 해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³⁾ **제33조(체납관리)**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날 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월력)일수)

- 2) 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 관련(안 제28조제3항)
- 안 제28조제3항은 과다한 수돗물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일시에 수도요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 그러나 수돗물 사용량 과다 발생 원인은 계절 및 기온, 가구 구성원수, 영업점포 업태 변경 등 다양하여 사용량 과다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시 납부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연체금 면제를 위해 악용될 개연성(특히, 다량급수처)도 있음.

또한, 여러 가구 및 영업점1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미납 가구·영업점 발생 등으로 인해 분할납부 제도를 무분별하게 이용할 소지가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한 요금징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다만,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는 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므로 부담경감 측면에서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미납(체납) 수도요금의 경우는 현재 본부장 방침으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바,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밖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도요금 납부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
방법) ① ~ ② (생	략)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	방법) ① ~ ② (개정안과
		음)	같음)
<u><신 설></u>		③ <u>과다한 수도 사용, 누</u>	③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
		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	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
		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
		<u>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u>	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	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u>할납부할 수 있다.</u>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